

경북·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「전주기 방산 창업지원사업(3차년도)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경북·구미 지역의 국방 유·무인 복합체계 생태계 기반 구축과 방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,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·육성하고자 「전주기 방산 창업지원사업(3차년도)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12월 22일
경북산학융합원장

1. 사업 개요

사업목적

- 경북·구미 지역 유·무인 복합체계(MUM-T)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아이디어부터 시장 진입까지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K-방산 스타트업 육성

지원대상: 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*

* 세부 신청자격은 동 공고 '3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
협약기간: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

지원내용: 사업화지원(최대 3천만원*), 창업프로그램 등

초기&예비창업자 육성 지원*		방산 진입 플랫폼 구축 및 운영
교육, 마케터서치, 마케팅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	+	사업화지원, 기술교류회, 세미나, 국내 전시회 참가 등 지원

* 사업화지원 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

모집규모: 총 15개사 내외

2. 지원 내용

구 분	지원 세부사항	
초기&예비 창업자 육성지원 (경북창조 경제혁신 센터)	프로그램명	내 용
	① 방산 특화 실전형 창업교육	· 방산에 특화된 실전형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
	② 기업진단 및 마켓리서치	· 기업별 역량 진단 및 국내외 시장 동향/아이템 심층 분석
	③ IR 스케일업	· 기업별 사업 설명을 위한 IR자료(Deck) 작성 지원
	④ 마케팅 지원	·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지원
	⑤ 미니 데모데이	· 기업별 성과 공유 및 투자자 연계를 위한 IR피칭 기회 제공
방산 진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(경북산학 융합원)	프로그램명	내 용
	① 사업화지원	· 제품 개선 등을 위한 자금 지원(최대 3천만원)*
	② 협의체 구축	· 방산 창업기업과 체계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
	③ 기술교류회	· (부)체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매칭 및 교류 지원
	④ 신기술 세미나	· 창업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신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
	⑤ 전시회 참가	· 방산 관련 국내 전시회 참가를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등

* 사업화지원금 집행 항목 및 기준

구 분	내 용
시제품제작	[재료비·외주용역비] - 시제품 제작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외부 전문 용역(설계·디자인·가공) 비용 (제한) PC·태블릿·서버 등 기자재 및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(기준) 100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견적서 필수,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만 인정
시험 및 인증	[시험인증비] - 공인 시험·인증기관을 통한 성능 검증, 신뢰성 평가, 국내외 인증(KC 등) 획득 비용 (제한) 기업 자체(내부) 시험 비용 불인정, 양산 단계 인증 지원 불가 (기준) 인증 실패 시에도 사유서 증빙 시 비용 인정 가능
산업재산권	[지재권 취득비] -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된 국내외 특허, 상표, 디자인 출원 및 변리사 비용 (제한) 대표자 등 개인 명의 출원 절대 불가(법인/사업자 명의만 인정) (기준) 관납료, 변리사 수임료, 기술성 평가 비용 포함

3. 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창업 7년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로서, 아래의 <신청 세부 조건> 및 요건 ①~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

< 신청 세부 조건 >

▶ 신청가능 업력: 2018년 12월 23일 ~ 2025년 12월 22일

-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- ※ 예비창업자: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*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
- * 협약 기간 내 경상북도를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▶ 유의사항
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([참고 1]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)
- 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-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

- **요건 ①:**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장(본사)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기업
 - * 협약기간 동안 해당 소재지에 잔류(유지)하여야 하며,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소재지 사실 확인 예정
- **요건 ②:** 국방 유·무인 복합체계(MUM-T) 전·후방 산업 영위 기업

분야	관련기술
센서	레이더, SAR, EO/IR, 소나, 레이저, 항법, 특수센서 등
정보통신	네트워크, 통신교환, 단말, 데이터전송, 전자전, 국방SW, 국방M&S 등
제어전자	유도조종, 무인/자율, 사격제어, 구동, 특수제어 등
탄약/에너지	탄두, 신관, 추진체, 화약응용장치, 지향성에너지, 비살상무력화 등
추진	공기흡입 추진, 로켓추진, 전기추진, 특수추진 분야 등
소재	구조재료, 내열/단열재료, 장갑재료, 스텔스재료, 전자재료, 특수재료 등
플랫폼/구조	생존성/스텔스, 탑재구조체, 지상체구조, 해양체구조, 비행체구조 분야 등

- **요건 ③:** 동 사업의 기존 수혜기업(1~2차년도 선정기업)이 아닐 것
 - * 대표자가 기존 수혜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신청 불가

신청 제외 대상

- ① 동 사업(전주기 방산 창업지원사업)의 기존 수혜기업
 - 1차년도(2024년), 2차년도(2025년) 본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기업(대표자 포함)
 - 중도 포기 기업 및 실패 판정 기업 또한 재신청 불가
-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 -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 -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자
 -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 -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-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 -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 -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- ④ 중앙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중 '중복지원'에 해당하는 경우
 -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본 사업의 지원기간이 중복되고, 지원내용(인건비, 시제품제작비 등)이 동일한 경우 중복 수혜 불가
 - (※ 단, 단순 멘토링, 교육 등 비예산 지원사업이나 사업비 구성이 명확히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, 해당 여부는 운영기관 문의 요망)
- 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 -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부,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(기업)
- ⑥ 운영기관(경북산학융합원 등)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< ⑥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 -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 - 환수금 등에 대해 법원의 회생/파산 절차에 따라 면책 결정을 받은 자
- ⑦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의 전담 인력 또는 임직원
 - 본 사업의 운영기관(경북산학융합원) 및 참여기관(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)의 임직원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
- ⑧ 경북산학융합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 -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

4. 접수 방법

- **접수기간:** '25. 12. 22.(월) ~ '26. 1. 7.(수) 15:00까지
- **접수방법:** 담당자 이메일(E-mail) 접수 (※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)
 - 제출처: dm@giaci.or.kr
 - 제출방법: 모든 제출서류의 파일명은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'제출서류명_기업명'으로 파일 첨부 및 압축하여 제출
(예시) 1. 사업신청서_기업명.pdf
2. 사업계획서_기업명.pdf
3. 대표자 신분증 사본_기업명.pdf
- **신청 시 유의사항 (필독)**
 - 이메일 발송 후 접수 확인 필수
 - 신청자는 이메일 발송 후,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(054-478-6903)으로 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
 - 접수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서류 누락, 전송 오류 등의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 - 서류 누락 및 반환 관련
 -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(파일 깨짐, 암호 설정 등), 사전 적합성 검토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선정된 기업에 한해 협약 체결 시 원본 대조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 - 마감 시간 엄수 및 조기 제출 권장
 - 마감일(특히 마감 시간 임박 시)에는 문의 폭주 및 메일 서버 전송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이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을 권장
 - 마감일 15:00 정각 이후에 도착한 메일은 접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

□ 제출서류

순	제출유무	제출서류	서식	비고
1	필 수	사업신청서	-	
2	필 수	사업계획서 [1-A] ※ 신청 대상이 예비창업자일 경우 [A] 작성 및 제출	[붙임 1-A]	
		사업계획서 [1-B] ※ 신청 대상이 창업 7년미만 기업인 경우 [B] 작성 및 제출	[붙임 1-B]	
3	해당 시	사업계획서 참고자료	[붙임 2]	
4	필 수	대표자 신분증 사본 ※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1개	[붙임 3]	
5	필 수	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) ※ 공고일 기준, 유효기간 확인	[붙임 4]	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6	필 수	지방세 완납증명서 ※ 공고일 기준, 유효기간 확인	[붙임 5]	정부24 (www.gov.kr)
7	필 수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※ 팀원 모두	[붙임 6]	
8	필 수	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동의 ※ 팀원 모두	[붙임 7]	
9	해당 시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(*조회기간: 최근 1년 / 발급범위: 전체근로자 / 월평균보수: 표시) ※ '사업계획서-일반현황-기업구성현황' 내 작성한 팀원(재직자) 확인용	[붙임 8]	고용산재보험토달 서비스 (total.kcomwel.or.kr)
10	해당 시	창업기업 성과 증빙서류 ※ '사업계획서-일반현황-주요성과' 내 작성한 매출, 고용, 투자 등 증빙서류 첨부 - 매출 :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, 재무제표 등 - 투자 : 투자계약서(금액 포함) - 고용 :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	[붙임 9]	2025년 실적은 추정치 기재(증빙은 협약 체결 시 제출) ※ 단, 실제 수치와 차이가 과도할 경우 선정 취소
11	해당 시	가점관련 증빙서류* ※ 접수마감일 전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- 구매의향서 (구매 해당업체 날인 필수) - 투자계약서 (투자당사자 정보 확인, 투자금액, 투자일자 등 발체) - 기술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인증서 - 국방기술 활용여부 (기술이전 계약서) -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	[붙임 10]	
12	해당 시	사업자등록증 ※ 문서 발행일 공고일 이후 일자	[붙임 11]	
13	해당 시	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 ※ 문서 발행일 공고일 이후 일자	[붙임 12]	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
14	해당 시	[예비창업재]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[초기창업재] 창업기업확인서	[붙임 13]	

*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5.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추진 체계

- 본 사업의 평가는 '사업 참여 기회 부여(서면)'와 '지원금 규모 결정(발표)'의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

① 요건 검토	② 선정 평가(서류)	③ 발표 평가
신청 자격 및 필수 서류 검토	사업 참여기업(15개사) 확정 (상위 15개사 선발)	사업화지원 금액 차등 결정 (선발된 15개사 대상 순위 경쟁)
'26. 1월 중	'26. 2월 중	'26. 4월 말

신청기업의 요건 검토는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□ 단계별 세부 평가내용

① 선정평가(서면평가): 사업 참여권 확보

- (목적) 신청기업 중 사업 취지에 적합한 우수 기업 상위 15개사 선발
- (대상) 요건 검토를 통과한 신청기업 전체
- (방법)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술성, 사업성 등 종합 평가
- (결과) 평가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상위 15개 기업 선정(협약체결)

② 등급평가(발표평가): 사업화 지원금 결정

- (목적) 선정된 1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별 지원금 규모 확정
- (대상) 서면평가를 통과한 15개 기업(전원 사업 참여 확정 상태)
- (방법) 대표자 발표(PT)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수행 역량 평가
* 발표(질의응답 포함) 20분 내외 / 평가지표는 추후 공개
- (결과) 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차등 배정

순위	구분	지원내용	비고
1~8위	아이템 고도화	기업당 3,000만원	기업매칭비용 없음
9~15위	아이템 개발	기업당 2,000만원	기업매칭비용 없음

□ 평가지표(선정평가 時)

- 창업 아이템의 제품에 대한 개선 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기업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세부평가	배점	평가내용
사업계획 필수사항	적합 여부	사업목적과의 적합여부(O,X): 국방 유·무인 복합체계(MUM-T) 전·후방 산업에 종사 → 부적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1. 문제인식 (Problem)	10	1-1. 창업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1-2. 창업아이템 목표시장(고객) 설정 및 요구사항 분석
2. 실현가능성 (Solution)	30	2-1. 창업아이템의 개발/개선 준비 현황 2-2. 창업아이템의 실현(개선/개발) 및 구체화 방안
3. 성장전략 (Scale-up)	40	3-1. 창업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성과 3-2. 창업아이템 방위산업 시장진입 등 사업화 전략 3-3. 사업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
4. 기업 구성 (Team)	20	4-1.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 4-2. 방산·민수 기술 및 제품 개발 역량
합계	100	
5. 가산점 (최대 10점)	4	5-1. 구매의향서 보유 여부(최대 1건 인정)
	3	5-2. 최근 2년 이내 1천만원(현금) 이상 투자유치 실적(최대 1건 인정)
	2	5-3. 국방기술이전 계약서(최대 1건 인정)
	1	5-4.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(최대 1건 인정)

※ 평가점수 70점 미만 시(가산점 포함 110점 만점 기준) 선정 제외

※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정

※ 평가지표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6. 유의사항

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‘전주기 방산 창업지원사업’ 지침·세부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□ 공통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, 융합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, 평가대상 제외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공고 내용 중 일부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타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후 중복으로 협약체결은 불가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발표평가는 대표자(총괄책임자)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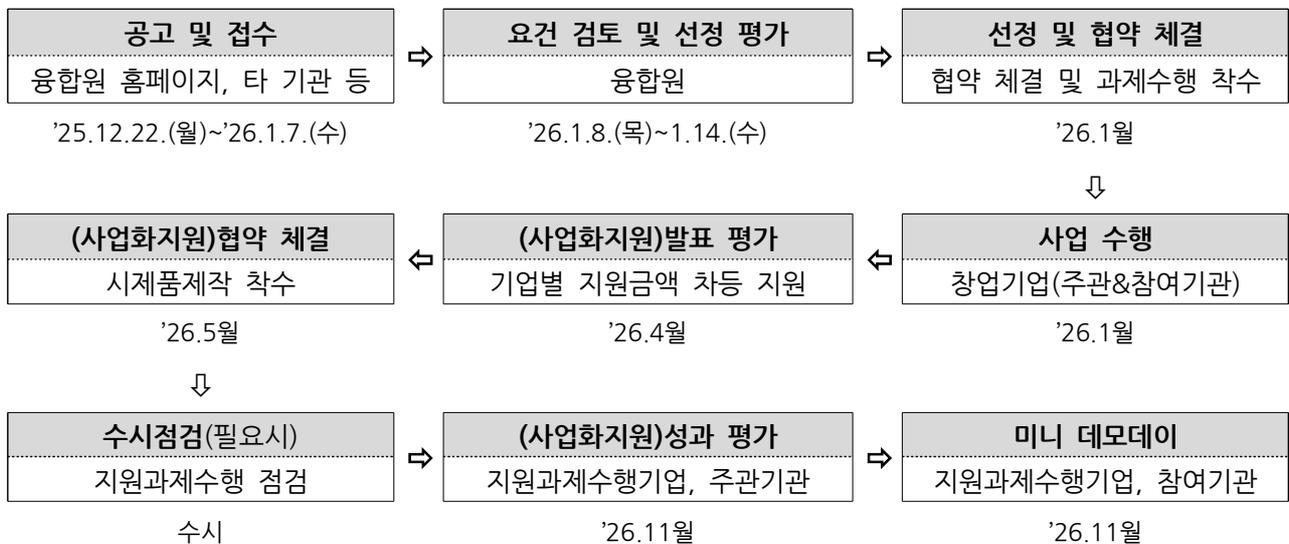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 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의 점검·평가 결과에 따라 동 사업 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

□ 선정자 유의사항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융합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융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, 협약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7.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8. 기타사항

□ 문의처

- 경북산학융합원 사업기획팀
 - 김동명 주임연구원 ☎ (054)478-6903 / E-mail: dm@giaci.or.kr

참고 1

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〔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〕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	불인정 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불인정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폐업 3년 까지 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불인정 창업 불인정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후 창업 시	-	창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폐업 3년 까지	불인정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 불인정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불인정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불인정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불인정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불인정	
	이종		창업	

- ※ 위 표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(창업의 범위)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,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 국가법령정보센터 : law.go.kr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- 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신청가능 여부 : "창업여부"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
- ※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,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

참고 2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희주점업	56211
2	무도유희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